

이 규칙(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을 전부 개정하기 이전에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처리  
규칙」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7월 일

서울특별시 중구 청장



##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 1. 개정이유

「지방세기본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4474호, 2016. 12. 27. 공포, 2017. 3. 28. 시행)되면서 지방세 징수규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제정함에 따라, 이 규칙 중 구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지방세기본법」 및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의 체계에 맞도록 전부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규칙의 목적, 정의,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각종 대장 등의 작성·비치, 서류의 송달 등을 규정함 (안 제1조~제5조)
- 나. 부과의 취소 및 변경, 구세환급금의 처리·지급대상자·충당, 납세담보의 범위 등을 규정함 (안 제6조~제10조)
- 다. 각종 통지의 전산처리 등을 규정함 (안 제11조)

###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 8. 16(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참조:세무1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 17, 중구청(예관동), 전화 : 02-3396-5103, FAX : 02-3396-8695, E-mail : charmio@junggu.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 문의하실 분은 중구청 세무1과(☎3396-5103)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안 1부. 끝.

##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안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의 시행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과부서의 장”이란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를 부과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2. “징수부서의 장”이란 구세를 징수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3. “수납기관”이란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서울특별시 중구금고(이하 “구금고”라 한다)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금고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3조(법령 등과의 관계)** 구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각종 대장 등의 작성·비치)**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영,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른 각종 대장 등을 비치하고 그

처리내역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장치(이하 “전산”이라 한다)를 이용하여 작성·처리·저장하고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비치·작성·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제5조(서류의 송달)** 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조례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서류를 교부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③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에는 우편물수령증을 수령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고, 세무공무원이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에 그 교부내역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에 송달일자와 수령인을 기재하여 수령인의 서명·날인(수령인이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을 받고, 수령인이 서류수령을 거부하여 송달장소에 서류를 둔 경우에는 유치송달보고서에 그 처리내역 등을 기재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⑤ 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한 서류가 반송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우편물 반송 접수대장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송달불능부에 그 반송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6조(부과의 취소 및 변경 등)** 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58조에 따른 구세의 부과취소 또는 경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지



방세 부과취소(경정) 결정서 및 제6호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경정처분 내역을 첨부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감액결정결의서에 따라 감액결정을 하고, 같은 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에 그 결정내역을 기재하여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징수부서의 장은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징수부에 그 통지내역을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구세환급금의 처리)** 징수부서의 장은 구세를 수납한 후에 제6조제1항에 따라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내역 및 처리내용 정리부에 그 처리내역을 기재하고 그 수납된 구세는 구세환급금(이하 “환급금”이라 한다)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8조(환급금 지급대상자)** ① 환급금은 해당 납세자의 구세 체납액에 우선 충당하고, 시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 그 잔여금은 해당 납세자에게 환급한다.

② 연대납세의무자(소유 지분별로 납세의무를 지는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구세를 환급하는 경우에는 각 연대납세의무자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연대납세의무자 지방세환급금 지급 동의서를 제출받아 정당한 지급대상자임을 확인한 후 환급하고, 제출된 동의서는 관련 결의서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환급금의 충당)** 영 제37조에 따른 환급금의 충당은 별지 제9호서식

의 지방세환급금 충당 결의서에 따른다.

**제10조(납세담보의 범위)** ① 법 제65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에는 다음 각 호의 증권을 포함한다.

1.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 등 특별법에 따라 발행한 증권(채권을 포함한다)
2.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의 사채권 중 보증사채 및 전환사채
3.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 또는 금융투자협회에 등록된 매매 사실이 있는 유가증권
4. 양도성예금증서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익증권 중 무기명 수익증권 및 환매청구 가능한 수익증권

② 법 제65조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은행법」에 따른 금융회사
2.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3. 보증 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자력(資力)이 충분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제11조(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부과부서의 장과 징수부서의 장이 법, 영,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라 서로 통지하거나 처리하여야 할 각종 통지서 등을 전산으로 작성·처리 및 관리함으로써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통지 또는 처리한

것으로 본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구세의 부과·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다.

**제3조(법령 개정에 따른 다른 규칙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본문 중 “「지방세기본법」 제50조”를 “「지방세기본법」 제49조”로 하고, “같은 법 제51조”를 “같은 법 제50조”로 한다.

제12조 본문 중 “「지방세기본법」 제135조”를 “「지방세기본법」 제139조”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본문 중 “「지방세법」 제64조”를 “「지방세기본법」 제140조”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지방세법」 제64조”를 “「지방세기본법」 제140조”로 한다.

③ 「서울특별시 중구 제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 중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부과징수 규칙」을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4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의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 송달부(교부)

[illegible]

210mm×297mm(백상지 80g/m<sup>2</sup>)

**우편물 반송 접수대장**

[illegible]

※ 구분 : 고지서, 독촉장, 환급통지 등 서류명을 기재함

210mm×297mm(백상지 80g/m<sup>2</sup>)

년도      기분      세(서류명 기재)      송달불능부

[illegible]

210mm×297mm(백상지 80g/㎡)





## 지방세 부과취소 · 경정처분 내역

| 과세<br>번호 | 연도/<br>기분 | 납세의무자 |    | 주민(법인)<br>등록번호 | 세액(본세) |    |    |    |    | 취소·<br>경정사유 |  |
|----------|-----------|-------|----|----------------|--------|----|----|----|----|-------------|--|
|          |           | 성명    | 주소 |                | 세목     | 당초 | 취소 | 경정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부과취소 또는 경정내역이 많을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

210mm×297mm(백상지 80g/㎡)



## 연대납세의무자 지방세환급금 지급 동의서

[illegible]

210mm×297mm(백상지 80g/㎡)

## 지방세환급금 총당 결의서

|                             |                           |               |      |   |     |      |           |            |       |    |
|-----------------------------|---------------------------|---------------|------|---|-----|------|-----------|------------|-------|----|
| 결재                          |                           | 발             | 의    | 년 | 월   | 일    | (인)       |            |       |    |
| 징수관                         |                           | 징             | 수    | 부 | 등   | 재    | (인)       |            |       |    |
| 과 장                         |                           | 지             | 방    | 세 | 환   | 급    | 금         |            |       |    |
|                             |                           | 정             | 리    | 부 | 등   | 재    | (인)       |            |       |    |
| 팀 장                         |                           | 총 당 통 지 서 발 부 |      |   | 년   | 월    | 일         |            |       |    |
|                             |                           |               |      |   | (인) |      |           |            |       |    |
| 담당자                         |                           | 통 지 서 번 호     |      |   | 년   | 월    | 일         |            |       |    |
|                             |                           |               |      |   | (인) |      |           |            |       |    |
| 총당금액 (금 _____ 원) (W _____ ) |                           |               |      |   |     |      |           |            |       |    |
| 세<br>입<br>항<br>목            | 구분                        | 세입<br>연도      | 세입과목 |   |     |      | 환급금<br>총액 | 과오납<br>연월일 | 환급자   |    |
|                             |                           |               | 관    | 항 | 목   | 과세번호 |           |            | 주소    | 성명 |
|                             |                           |               |      |   |     |      |           |            |       |    |
|                             | 총당후 잔액(과오납총액 - 총당액 총액)    |               |      |   |     |      |           |            |       |    |
|                             |                           |               |      |   |     |      |           |            |       |    |
| 총<br>당<br>내<br>역            | 구분                        | 세입<br>연도      | 세입과목 |   |     |      | 미납<br>총액  | 총당액        | 납세의무자 |    |
|                             |                           |               | 관    | 항 | 목   | 과세번호 |           |            | 주소    | 성명 |
|                             |                           |               |      |   |     |      |           |            |       |    |
|                             | 총당 후 미수납(총당액 총액 - 환급금 총액) |               |      |   |     |      |           |            |       |    |
|                             |                           |               |      |   |     |      |           |            |       |    |
| 적요                          |                           |               |      |   |     |      |           | 수납부정리      | (인)   |    |

210mm×297mm(백상지 80g/㎡)